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796
----------	------

제안일자 : 2021.12.1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자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사업시행 근거를 삭제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등 자구를 정리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과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7조, 제10조)
-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의 자문범위를 수정하고, 자문위원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 중 “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안 제5조(중전의 제6조) 중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을 “따른”으로 한다.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시행규칙)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안 제6조(중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2.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안 제8조(중전의 제10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 략)</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p>	<p>제1조(목적) ----- ----- 규정함----- ----- ----- ----- -----.</p> <p>제2조(정의) ----- -----.</p> <p>1. (조례안과 같음)</p> <p>2.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조례안과 같음)</p> <p><삭 제></p>

항을 포함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현황과 전망

2.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3. 승강기의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략)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

제4조 (조례안 제5조와 같음)

제5조(실태조사) ----- 따른 -----

-----.

<삭 제>

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 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9조(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 ④ (조례안과 같음)

⑤ (조례안 제3항과 같음)

⑥ (조례안 제4항과 같음)

제7조(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2.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 ⑦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1. ~ 3. (조례안과 같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
람

5. (조례안 제4호와 같음)

③ ~ ⑦ (조례안과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4.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6. 서울특별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지원 산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영위하는 자,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점검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의 전문위원은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건축·안전관리·기계·전기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승강기 관련분야(제조·유지관리 등)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점검단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시 위촉이 자동해제 된다. 다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검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2.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및 승강기 관련 협회 임직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할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승강기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